



업무 외 부상을 당한 경우? 장애 수당 안내



Workers' Compensation Board

뉴욕에서 영리 고용주와 많은 비영리 고용주는 장애인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퇴직 후 병에 걸려서 일할 수 없다면 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현금 수당을 지급합니다. 즉,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 외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현금 수당

수당은 평균 주당 임금의 50%, 주당 최대 \$170입니다. 평균 주당 임금은 마지막 근무일 전 8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당은 52주 연속으로 최대 26주간 장애에 대해 지급됩니다. 수당은 사회 보장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은 7일이고 수당은 장애 발생 후 8일째부터 시작됩니다. 1차 수당은 장애가 발생한 14일째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이내에 또는 청구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중 더 늦은 날짜를 우선으로 지급됩니다. 수당은 장애 기간 동안 격주로 지급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장애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권리 보장 장애 수당법 (DB-271S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와 무관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면 수당에 대한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장애는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 또는 산모는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또는 공인 조산사는 의료 보고서로 장애를 증명해야 합니다. 때때로 보험사는 광범위한 장애에 대해 보다 상세한 의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와의 유대 관계는 유급 가족 휴가에 대한 자격 취득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단, 장애 수당과 유급 가족 휴가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급 가족 휴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gov/PaidFamilyLeave를 방문하거나 (844) 337-6303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보험료 및 보장 내용

고용주는 직원으로부터 장애 보험료를 상쇄하기 위해 주당 60센트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임금의 1%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당 60센트까지입니다.

실업 보험 및 장애

실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실업 보험 수당 및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보험 수당을 받고 있으며 퇴사 후 4주부터 26주까지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가 발생한 첫 날부터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당사자가 취업을 못하게 되어 실업 보험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애 수당 청구 통지 및 증명서(DB-450 양식)**은 근로자 산재 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에 직접 제출하십시오.

장애인 생활보조금 보험

고용주는 장애인 생활보조금 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조금 보험은 여기에 기술된 의무(또는 법정) 보험에서 요구되는 것과 다른 수당을 제공합니다. 보험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가능한 수당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제한 사항

재직 중이면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 보험은 의료 보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기 수술로 인해 상해 기간 동안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장래의 고용주는 당사자를 고용하기 전 해당 상해 보상 청구에 관해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서 제출 방법

1. 장애를 입은 후 30일 이내에 고용주 또는 보험사에 **장애 수당 청구 통지 및 증명서(DB-450 양식)**를 제출하십시오. 본 양식은 wcb.ny.gov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빨리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제출하려면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늦게 청구했을 경우, 청구가 제기된 날짜보다 2주 이상인 장애 기간 동안에는 청구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당하게 더 일찍 접수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접수가 늦어도 괜찮습니다. 장애를 입은 후 26주가 지나서 신청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담당 의료 제공자는 **DB-450 양식의 파트 B, 의료 제공자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 상황

■ **기각된 청구:** 해당 청구가 기각된 경우, 당사자는 기각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요청은 아래 주소의 산재 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장애 수당국(Disability Benefits Bureau)으로 제출하십시오.

여전히 장애를 입었고 26주 전까지 급여 수령이 중단되었다면 당사자는 장애 수당국(Disability Benefits Bureau)에 검토 요청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가 적절하고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추가 정보를 받고 당사자 청구에 대한 심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에 대해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장애 수당은 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될 때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사회 보장 수당:** 여전히 일을 하고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의 퇴직 수당을 받는다면 장애 수당 수령 자격이 됩니다. 단,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의 장애 수당을 받고 있는데 NYS 장애 수당에 대한 청구를 제출하면 두 가지 수당 중 큰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의 장애 수당이 \$400이고 NYS 장애 수당이 \$170인 경우에는 \$400만 받게 됩니다.

언어 지원

위원회는 당사자가 필요하는 언어로 서류를 번역합니다. 심리 때에는 언제든지 무료 통역사도 제공됩니다. 번역 또는 통역 서비스를 받으려면 **(877) 632-49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wcb.ny.gov를 방문하십시오.

해당 장애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전화: (877) 632-4996

청구에 대한 요청이나 기타 서신 주소:

**Workers' Compensation Board / Disability Benefits Bureau
328 State Street
Schenectady, NY 12305**

뉴욕 주 산재 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는 부상을 당하거나 아픈 근로자에게 수당이 적절히 지급되도록 하고 법규의 준수를 촉진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근로자 산재 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cb.n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